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15호 2015. 09. 14.(월)

## 차 례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3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3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4

###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25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2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2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2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7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 - 13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09. 1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 294-28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09. 1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09-1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56-7외 2필지(556-39, 556-4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294-28 (왕길동)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13-4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1로 40 (오류동)	2012-10-25	보듬로에서 첫번째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166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 8 (경서동)	2013-07-30	보석을 이용한 경관구조계획 개념에서 착안	
4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28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7번안길 22 (경서동)	2013-07-30	보석로17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264외 4필지 (265-1, 265-4, 265-3, 265-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68번길 26-87 (금곡동)	2009-07-10	봉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68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30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42-38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A9-4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6-1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가정지구 A9-5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498번안길 8 (가정동)	2015-01-30	염곡로498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4-9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02번길 4 (마전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63-15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122번길 16-1 (연희동)	2012-03-30	청라라임로의 시작점에서 1,2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67-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42번길 6-17 (경서동)	2012-03-30	청라루비로의 시작점에서 4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 - 134호

##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5. 09. 1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원당대로 997-1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원당동 493-5	원당대로 997-1	2015.07.24.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청시 제2015 - 138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5호선)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5-48호(2005. 4. 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 소로3류5호선, 사업명 :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5. 9. 14.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11-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류5호선)
  - 명칭 : 공촌취락지구 소3-5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B=6m, L=6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3.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소로	3	5	6	국지 도로	66	소3-1	소3-2	일반 도로	2005. 4. 4.	

## ■ 용 지 조 서

일련 번호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40	전	1,117	382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90-22 임창빌라 비동 306호	-	-	-	
2	산38-5	임	165	9	국	기획재정부	-	-	-	
3	11-20	도	3,246	107	공	서구청	-	-	-	
4	40-11	임	920	35	이정순외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450번길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5(을지로1가)	근저당	
5	20-1	임	345	11	국	산림청	-	-	-	
6	40-31	전	134	27	공	서구청	-	-	-	
7	20-5	임	123	35	공	서구청	-	-	-	

## ■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규격	수량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성명	주소	
1	인천	서구	공촌동	40전	비 닐 하우스	철골/비닐	3.0x6.0	5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990-22 임창빌라 B/306호	(단위/㎡)
							4.0x6.0	17	이태순	"	(단위/㎡)
2	인천	서구	공촌동	11-20도	통신맨홀	콘크리트	D900	1	kt		(단위/개소)
3	인천	서구	공촌동	40임	수목	유실수	복숭아나무	7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990-22 임창빌라 B/306호	(단위/주)
							산수유	4	"	"	(단위/주)
							앵두나무	1	"	"	(단위/주)
							감나무	16	"	"	(단위/주)
							배나무	5	"	"	(단위/주)
							사과나무	3	"	"	(단위/주)
							대추나무	13	"	"	(단위/주)
							호두나무	1	"	"	(단위/주)
							은행나무	1	"	"	(단위/주)
							매실나무	28	"	"	(단위/주)
							꾸지뽕나무	9	"	"	(단위/주)
							블루베리	9	"	"	(단위/주)
							아로니아	36	"	"	(단위/주)
							복분자	21	"	"	(단위/주)
							회향목	3	"	"	(단위/주)
							철죽	15	"	"	(단위/㎡)
							수목	조정수	보리수	36	"
작약	2	"	"	(단위/주)							
국화	1	"	"	(단위/주)							
농작물		도라지	15	"	"	(단위/주)					
		들깨	25	"	"	(단위/주)					
		고추	15	"	"	(단위/㎡)					
		고구마	15	"	"	(단위/㎡)					
		쑥갓	15	"	"	(단위/㎡)					
4	인천	서구	공촌동	40-11임	수목	조정수	측백나무	30	이정순 외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450번길24(공촌동)	(단위/주)
5	인천	서구	공촌동	40-11임	웬스	철골/망	h=1.8	41	"	"	(단위/m)
6	인천	서구	공촌동	40-11임	웬스	철골/망	h=1.8	43	이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990-22 임창빌라 B/306호	(단위/m)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 - 1259호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68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로1류68호선, 사업명:중로1-68호선 도로 개설공사(미개설구간)】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9. 14.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 변경 및 토지합병에 따른 용지조서(지번) 변경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474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도로(중로1류68호선)
  - 명칭 : 중로1-68호선 도로개설공사(미개설구간)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306m, B=20m, A=6,491m<sup>2</sup>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비고
				총폭	금회	총연장	기시행	금회	잔여	
도로	중로	1	68	20	20	2,696 (2,004)	2,143 (1,451)	306 (306)	247 (247)	(서구 연장)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당초】

- 성명 : 주식회사일륜 대표이사 김백준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4-19, 디동 344호(고잔동, 산업용품유통상가)

**【변경】**

○ 성명 : 주식회사포시티 대표이사 김백준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323, 비동 2701호(송도동, 송도센트로드)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04. 14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변경) :

**【당초】**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가좌동	173-474	잡	736	736	주식회사 일륜	인천 남동구 은청로 4-19	-	-	-	
2	가좌동	173-475	잡	195	195	주식회사 일륜	인천 남동구 은청로 4-19	-	-	-	
3	가좌동	173-476	잡	5,447	5,447	주식회사 일륜	인천 남동구 은청로 4-19	-	-	-	
4	가좌동	173-509	도	113	113	인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	-	-	-	
계				6,491	6,491						

**【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m <sup>2</sup> )	편입면적 (m <sup>2</sup>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가좌동	173-474	잡	6,378	6,378	주식회사 포시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비동 2701호	-	-	-	
2	가좌동	173-509	도	113	113	인천 서구					
계				6,491	6,491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7번 참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4번 참조

10.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6일간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 - 1261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09. 14.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추가하고,
-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공공시설내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 및 계약해지시 재신청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적용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추가 규정
-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매점면적제한규정 및 계약해지시 3년간 재신청 금지하는 조항 삭제
- 구비신청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삭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명확히 규정

###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 560-4312, 팩스 560-27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추가하고,
-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공공시설내 매점의 면적 제한 규정 및 계약해지시 재신청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 조례적용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추가 규정
-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매점면적제한규정 및 계약해지시 3년간 재신청 금지하는 조항 삭제
- 구비신청서류 중 주민등록등본 삭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범위 명확히 규정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로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로 하고,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으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로 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공공시설에”를 “공공시설 내에”로 하고,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를 “조례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등에게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하는”을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각호와”를 “각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제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에”를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로, “반회보, 구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를 “반상회보,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4조 중 “구 관내 거주자로서”를 “제3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를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한 다”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제1항 중 “제4조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장애인등에게 계약하도록”를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도록”으로, “장애인등 2인이상”을 “장애인 등 2명 이상”으로, “추첨에 의하여, 그 이외는 당해”를 “추첨으로 하며, 그 이외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기간내”를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중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받은자는”을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받은 자는”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해당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장애인 등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 ② 삭제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을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인천광역시 서구 <u>공공시설내의</u>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인천광역시 서구 <u>공공시설 내의</u>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자) 및 65세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 -----.</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u>공공시설에</u> 신문·복권판</p>	<p>제2조(적용의 범위) ① ----- ---<u>공공시설 내에</u>-----</p>

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바에 의한다.(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장애인등에게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3. (생략)

제3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그 투자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할 때에는 이를 반회보, 구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구 관내 거주자로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원하는 자는

-----  
 -----  
 -----  
 ----- 조례를 따른다.<후단 삭제>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  
 -----  
 ----- 각 호와 -----.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3. (현행과 같음)

제3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  
 -----  
 -----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 반상회보,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

제4조(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른  
 -----  
 -----  
 -----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주민등록등본
- 3. 장애인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그 투자기관의 장이 제4조 규정에 의한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는 당해 기관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 규정에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한다.

- 1. (현행과 같음)
- <삭제>
- 3.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① -----  
 -----  
 ----- 제4조에 따른 -----  
 -----  
 -----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도록 -----  
 ----- 장애인 등 2명 이상 -----  
 -----  
 ----- 추첨으로 하며, 그 이외는 해당 -----.

② 제1항에 따라 -----  
 -----  
 ----- 기간 -----  
 -----.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의하여 계약을 받은자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당해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기타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장애인 등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등을 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계약을 받은 자는 -----  
 -----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  
 -----  
 -----  
 ----- 해당 -----  
 -----.

제7조(계약의 해지) 해당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그 밖의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장애인 등이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② 삭제

제8조(사용료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8조(사용료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을 따른다.

## 【별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 관련)

순 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 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 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65세~69세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3	장애 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관계법령 발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단체의 범위, 매점의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26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14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 2. 주요내용

-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 을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로 변경
- 제5조제2항 중 “담당국장” 을 “담당 실·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을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변경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4700,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조직개편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을“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 “ 담당국장” 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 “ 「건설기술관리법」 ”을 “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한다.

###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을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취

### □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1271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맞도록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세부 구성요소를 규정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법령용어 정비 및 문맥에 맞지 않는 문구 개정

#### 2 주요내용

-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구성요소 명시
-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규정 명시
- 민원후견인 지정규정 명시
- 실무종합심의회 구성·운영 명시
-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대행 조항 삭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추어 용어 및 문맥 정비
- 민원조정위원회 의결서 등 별지서식 추가

####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민원봉사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255) 또는 Fax (560-285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1부.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장제4절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간 내부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재차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4.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기관장의 최종결정

## 제2장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등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민원봉사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민원후견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복합민원 또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 제3장 실무종합심의회

제6조(설치) 복합 민원사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부서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련부서담당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접수된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과 관련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관련 실무자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심의회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심의회의 간사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서류 처리담당자가 된다.

②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대상) ① 심의회의 심의대상 민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합민원으로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이고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
2. 사안이 중대하고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처리주무부서장은 민원 접수 후 48시간 안에 심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4장 민원조정위원회

제10조(설치) ① 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협의·조정사항이 필요한 민원 등 제11조의 대상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 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12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국장, 관계 부서의 국장, 감사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외부 법률전문가 및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담당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11조의 심의대상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 구성하며, 해당 민원사무가 끝남으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2(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민원서류처리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서기는 심의안건(별지 제2호서식)과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관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장 민원처리통보

제13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구청장은 처리 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접수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 등을 즉시 통지하고,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중간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별로 지금까지 처리된 민원내용, 문제점 및 조치사항, 최종처리결과 예상시기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최종처리결과 통지) 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청장의 최종결정을 받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 진술)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회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을 심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심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서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속직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장 보 칙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적용의 예외) 구 외의 민원사무심사관을 별도로 두는 기관에서는 제6조·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2조의2 규정을 따로 정하여 이 규칙을 운영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

□개 최 일 시 :

□장 소 :

□민원사무명 :

□심 의 안 건 :

적 합	부 적 합	비 고

※ 해당(적합 및 부적합)란에는 근거 규정 등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기술

상기와 같이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위원회직위 : 소속 : 직 : 성명 : (인)

## [별지 제2호서식]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

접수일	. . .			처리기한	. . . 까지( 일간)		
구 분	민원명	주 된 소재지 (위 치)	주된 행위 (내용)	관련 부서	근거 법규	저촉 여부	예상되는 문제 점
주목적 민원							
복합 민원							



## [별지 제4호서식]

## 민원처리진행상황 통지서

- 민 원 명 :  
 민원인 주소·성명 :  
 접 수 일 자 :  
 처 리 기 한 :

귀하께서 우리구에 신청하신 상기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 내용과 같이 처리진행상황을 알려드리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과 와 문의(☎ -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처리부서	과	과	과	과
완료민원				
처리중인 민원사항				
문제점 및 조치계획				
부서별 처리 예상시기				

.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